

규제영향분석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목 차>

1.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규업무 기준
2.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규업무의 금지행위
3. 증권 인수인에 대한 책임 강화

금융위원회

< 규제의 개요 >

1. 규제사무명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규업무 기준																			
2.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작성 자	이름	송병관															
	담당부서 (과)	자본시장과		직급	행정사무원															
	국장	김태현		연락처	02-2100-2643															
	과장	박민우		이메일	songbk99@korea.kr															
3. 관계법령 · 고시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7조의3 및 제77조의6제1항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유형</th> <th>인원수 또는 규모</th> <th>의견 수렴방식</th> <th>의견내용</th> </tr> </thead> <tbody> <tr> <td>피규제자</td> <td>금융투자업자</td> <td>종합금융투자 사업자(6개)</td> <td>입법예고</td> <td>-</td> </tr> <tr> <td>이해관계자</td> <td>금융투자업자, 관련협회</td> <td>종합금융투자 사업자(6개), 금융투자협회</td> <td>입법예고</td> <td>-</td> </tr> </tbody> </table>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 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금융투자업자	종합금융투자 사업자(6개)	입법예고	-	이해관계자	금융투자업자, 관련협회	종합금융투자 사업자(6개), 금융투자협회	입법예고	-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 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금융투자업자	종합금융투자 사업자(6개)	입법예고	-															
이해관계자	금융투자업자, 관련협회	종합금융투자 사업자(6개), 금융투자협회	입법예고	-																
5. 규제 존속기한	없음(지속추진 필요)																			
6. 구분 (신설 또는 강화)	강화																			
7. 신설(강화) 규제의 요지	자기자본이 4조원 이상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는 단기금융업무, 8조원 이상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는 종합투자계좌업무를 허용																			
8. 규제체계 및 법령위계정보	자본시장법 제77조의2 및 제77조의3 동법 시행령 제77조의3 및 제77조의6제1항																			

□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내용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차등화된 업무*를 허용

* 내부주문집행(3조원), 단기금융업무(4조원), 종합투자계좌관리업무(8조원)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7조의3(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등) ① 법 제77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u>3조원을 말한다.</u></p> <p><신 설></p> <p>② ~ ⑨ (생략)</p> <p>제77조의6(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업무) <u>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법 제77조의3제3항제2호에 따라 증권시장</u></p>	<p>제77조의3(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등) ① ----- ----- ----- <u>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u></p> <p>1. <u>전담중개업무,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업무 및 제77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를 영위하려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3조원</u></p> <p>2. <u>제1호에 따른 업무 및 제77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영위하려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4조원</u></p> <p>3. <u>제2호에 따른 업무 및 제77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를 영위하려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8조원</u></p> <p>② ~ ⑨ (현행과 같음)</p> <p>제77조의6(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업무) ① <u>법 제77조의3제3항제2호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만 허</u></p>

현 행	개 정 안
<p>에 상장된 주권,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동시에 다수의 자를 거래상대방 또는 각 당사자로 하는 장외매매 또는 그 중개·주선이나 대리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p> <p>1.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주문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매매금액 또는 매매수량 기준을 초과할 것</p> <p>2.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인 경우 그 주권이 상장된 거래소에서 형성된 매매가격에 근거하여 매매가격을 결정할 것</p>	<p>용하는 것이 적절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p> <p>1.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동시에 다수의 자를 거래상대방 또는 각 당사자로 하는 장외매매 또는 그 중개·주선이나 대리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업무</p> <p>가.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주문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매매금액 또는 매매수량 기준을 초과할 것</p> <p>나.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인 경우 그 주권이 상장된 거래소에서 형성된 매매가격에 근거하여 매매가격을 결정할 것</p> <p>2. 법 제360조에 따른 단기금융업무</p> <p>3. 종합투자계좌[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을 통합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고 고시하는 기업금융 관련 자산(‘기업금융관련자산’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등에 운용하고, 그 결과 발생한</p>

현 행	개 정 안
	<u>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것을</u> <u>목적으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u> <u>개설한 계좌를 말한다]업무</u>

1. 규제 의 필요성

가. 현황 및 문제점

- 신성장동력 산업과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선진형 투자은행(IB)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를 도입(13년)하였으나,
- 국내 증권사는 여전히 위탁매매와 같은 중개업 위주로 업무를 영위하고 있어 기업금융 업무의 경쟁력이 크게 뒤쳐진 상황임

나. 정부 개입의 필요성

- 현행 제도적 틀 안에서, 종합투자사업자 간 자율적 경쟁을 통한 업무 혁신(innovation)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
 - 국내 증권사가 기업금융 업무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일정규모 이상의 자기자본을 보유한 증권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새로운 업무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

다. 규제의 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 충분한 자기자본을 보유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이 기업금융을 위한 재원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효율적인 자금조달 수단을 신규로 허용
 - 이를 통해 M&A 등 기업금융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함

2. 대안의 발굴·검토

가. 고려된 대안

< 현행유지안 : 현행 업무 수준을 유지 >

- 자기자본 3조원 등 일정요건을 갖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현행 고유업무(기업신용공여, 전담신용공여 등)를 허용

< 비규제대안 : 해당사항 없음 >

- 신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 필요함

< 규제대안 :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자기자본에 따른 차등업무 허용 >

-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추가적인 신규업무(단기금융업무, 종합 투자계좌 관리업무)를 허용

나. 대안의 분석

< 네거티브 방식 적용여부 >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신규업무를 허용하는 사항으로 네거티브 방식 적용 대상이 아님

< 민간의 자율성·창의성 >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신규업무를 허용하는 사항으로 민간의 자율성·창의성이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은 아님

< 해외사례 분석 >

① 중수익 시현·수익구조 다변화 진전

- 과거 高위험-高수익 사업으로 높은 자기자본이익률을 기록하던 글로벌 IB들은 금융위기 후 규제강화 등 금융환경 변화에 맞는 사업재편 과정을 거치면서 5~10% 수준의 中수익을 시현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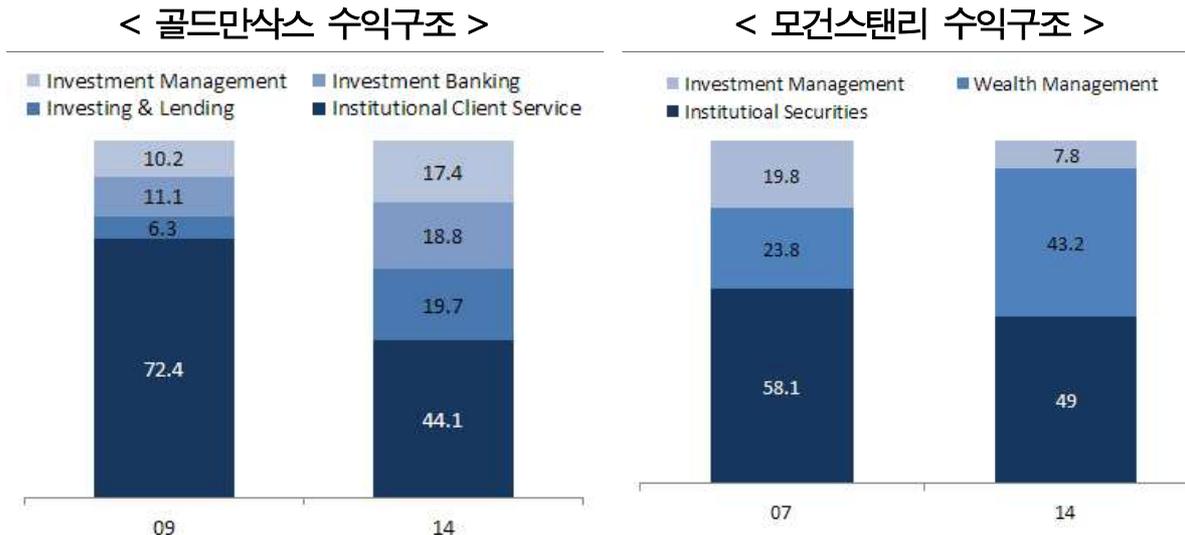
< 주요 IB들의 금융위기 전후 자기자본이익률(ROE) >

(단위 : %)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UBS	도이치뱅크	노무라
2005년	21.8	17.3	39.4	12.5	15.5
2014년	9.7	4.4	6.6	2.5	8.2

주 : 도이치뱅크의 경우 각종 과징금, 소송비용 등으로 '14년 이익률 저조

- 위기 후 고위험업무의 자기자본 규제 강화, 수익성 제고 니즈 등으로 IB들이 자산관리 등 사업다각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투자은행 업무에 집중됐던 수익구조의 다변화가 진전



주 : '07 및 '09년은 순영업수익, '14년은 영업수익 기준

② 안정적 수익기반 강화

- 주요 IB들은 시장 불확실성에 따른 수익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정적 수익원 확보 노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성장세를 유지하고 지속적 수익창출이 가능한 자산관리·자산운용사업 확대에 주력
 - 모건스탠리, UBS는 금융위기후 전환한 자산관리형 모델을 지속 강화하고, 대표 IB 골드만삭스도 소매은행업과 자산운용업 확대를 추진 중이며, 맥쿼리는 수익안정화에 초점을 두고 사업구조 전반을 개편

③ 미래 성장동력 확보 노력

- 핀테크 등 디지털화, 고령화와 같은 급속한 환경변화 속에서 신규 사업기회를 모색, 이에 적극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노력 확대

- IT투자에 가장 적극적인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주요 IB들은 디지털화 추세에 맞춰 블록체인 등 신규 수익원 발굴·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다이와는 일본의 고령화 진전에 대응해 상속·사업승계 사업을 전략적으로 확대

④ 사업모델 자체에 대한 재점검

- 단순한 사업영역의 축소·확대를 넘어서 기존 사업모델 자체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각 사의 역량에 맞는 지속성장이 가능한 모델로의 근본적 전환을 시도
 - 골드만삭스는 IT스타트업 투자를 넘어 사업영역, 업무방식, 문화 등 전반에 걸쳐 IT에 기반한 사업모델 혁신을 모색 중
 - '10년 Post Bank를 인수하며 유니버설뱅크 banking 전략을 추구했던 도이치뱅크는 동사 매각 등 대규모 구조조정을 추진하며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선회
 - 맥쿼리는 인수주선, M&A자문 등 전통적 IB사업을 축소하고 자산운용, 리스, 대출 등 강점을 보유하고 안정적 수익창출에 초점을 둔 사업구조(annuity-style business)로의 재편을 추진

⑤ 해외사업의 선별적 확대

- 그간 전방위적으로 해외사업을 확대하던 글로벌 IB들이 최근 수익성 강화에 주력하면서 선별적 해외진출 전략으로 선회
 - 모건스탠리, 도이치뱅크, 맥쿼리는 해외사업 확대 기조는 유지하되 저수익 지역에서 과감히 철수하며 해외사업의 수익성 제고에 나섰으며, UBS·노무라·다이와는 잠재 성장성이 높은 아시아 시장을 타겟으로 사업 전개

⑥ 日·中 IB의 해외 M&A를 통한 성장모색

- 일본·중국내 1~2위 증권사인 노무라, 증신, 해통증권은 해외 IB 인수를 통해 로컬증권사에서 글로벌 IB로의 도약 기반을 마련

- 금융위기 당시 리먼브라더스의 아태·유럽·중동 법인을 인수한 노무라는 이후 5년만에 흑자전환에 성공한데 이어, 이를 기반으로 미국·유럽 IB시장을 적극 공략 중
- 중국내 1위 중신증권과 2위 해통증권은 각각 '13년 CLSA, '14년 BESI(포르투갈 최대IB) 인수를 통해 글로벌 IB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폭넓은 해외 거점을 확보

< 타법사례 분석 >

- 해당 사항 없음

< 위임근거 검토 >

- 근거법령 : 자본시장법 제77조의3제3항

< 이해관계자 협의 >

- 사전협의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였고, 특히 사항은 없었음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본연의 업무보다는 브로커리지 및 신용공여 업무에 기반한 단순·안정적 업무에 안주하고 있어 실물경제 자금지원기능이 저하
-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하여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 등 신규 업무를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현행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본규모가 영세하여 안정적 모험자본 공급을 기대하기 곤란

< 결론 >

- 증권사가 적극적인 위험인수가 필요한 기업금융 업무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자기자본 수준별 신규 업무를 부여함으로써 자본확충 등 대형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3. 대안별 비용·편익 분석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존 시스템으로 신규업무 영위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은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함

4. 대안분석의 종합결론

가. 대안별 집행자원 및 능력

< 행정적·재정적 집행 가능성 >

-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자본규모에 따라 영위하게 될 신규업무는 기존 시스템으로 가능하며 추가적인 인력 및 예산소요 없음

< 기술적 집행 가능성 >

-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자본규모에 따라 영위하게 될 신규업무는 기존 시스템으로 가능하며 기술적 어려움 없음

< 지자체 등 집행 가능성 >

- 해당사항 없음

나. 분야별 규제영향평가 필요성

<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

-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단기금융업무 및 종합투자계좌 관리 업무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기업금융자산에 일정비율 이상 투자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규업무가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 되면 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융자 규모도 현행 대비 대폭 상승할 것으로 기대

< 경쟁영향평가 >

- 현행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하에서는 경쟁을 통한 자기 혁신(innovation)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
 - 이번에 신규로 허용되는 단기금융업무 및 종합투자계좌 관리 업무의 경우 은행법 적용이 명시적으로 배제(자본시장법 §77의3⑧)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만 허용되며* 일반 증권사는 은행법 위반 소지가 있어 동 신규업무 영위가 불가능
 - * 투자은행 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적 목적 하에 자본시장법 개정(13.5월)을 통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가 도입될 당시 도입된 규정
 - 일반 증권사의 업무영위 불가로 경쟁이 제한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금번 개정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님

< 기술규제 영향평가 >

- 해당사항 없음

다. 대안 선택 및 근거

- 현재 우리 증권산업은 혁신기업에 적극적으로 자본을 공급하기에 경쟁력이 부족한 상황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대형화를 유도하고, 기업금융 등 高부가가치 사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라. 선호된 대안의 기대효과

-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을 통해 자본시장의 실물경제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금융투자업 자체의 성장동력을 확보

마. 선호된 대안의 이해관계자 의견 및 조치

- 사전협의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였고, 특이 사항은 없었음

< 규제의 개요 >

1. 규제사무명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규업무의 금지행위				
2.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작성 자	이름	송병관
	담당부서 (과)	자본시장과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김태현		연락처	02-2100-2643
	과장	박민우		이메일	songbk99@korea.kr
3. 관계법령 · 고시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및 제77조의6제2항·제3항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 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금융투자업자	종합금융투자 사업자(6개)	입법예고	-
	이해관계자	금융투자업자, 관련협회	종합금융투자 사업자(6개), 금융투자협회	입법예고	-
5. 규제존속기한	없음(지속추진 필요)				
6. 구분 (신설 또는 강화)	강화				
7. 신설(강화) 규제의 요지	신규로 허용되는 단기금융업무 및 종합투자계좌 업무를 통해 모집된 자금의 운용규제를 신설				
8. 규제체계 및 법령위계정보	자본시장법 제77조의3 동법 시행령 제68조 및 제77조의6제2항·제3항				

□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내용

- 신규로 허용되는 단기금융업무 및 종합투자계좌 업무를 통해 모집된 자금의 운용규제를 각각 신설함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 ④ (생략)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71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⑤ ----- ----- ----- -----.
1. ~13. (생략)	1. ~13. (생략)
<신설>	13의2.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제77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하면서 같은 조 제2항의 기준을 위반하는 행위
<신설>	13의3.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제77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하면서 제326조부터 제32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준수하지 않는 행위. 이 경우 "종합금융회사"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본다.
<신설>	13의4.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제77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종합투자계좌의 관리 업무를 영위하면

현 행	개 정 안
<p>14. (생 략)</p> <p>제77조의6(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업무) <신 설></p>	<p>서 같은 조 제3항의 기준을 위반하는 행위</p> <p>14. (현행과 같음)</p> <p>제77조의6(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업무) ②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제1항제2호에 따른 단기금융업무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예탁자로부터 예탁받은 금전의 합계가 자기자본의 100분의 200 이내일 것 2. 예탁 받은 금전으로 운용한 자산을 고유자산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것 3. 예탁자로부터 예탁받은 금전의 합계의 100분의 50이상을 기업 금융관련자산에 운용할 것. 이 경우 구체적인 산정방식 및 비율 충족 여부에 대한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4. 제3호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남은 예탁받은 금전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지 않을 것

현 행	개 정 안
<p data-bbox="194 1680 363 1720"><신 설></p>	<p data-bbox="874 224 1316 264">가.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p> <p data-bbox="874 286 1439 398">나. 기업금융업무와 관련이 없는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p> <p data-bbox="874 421 1439 667">다. 그 밖에 기업금융업무와의 관련성 및 예탁자 보호를 감안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운용 방법</p> <p data-bbox="836 689 1439 1406">5. 예탁자로부터 예탁받은 금전의 합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부동산 관련 자산(‘부동산관련자산’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운용하지 않을 것. 다만,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 대규모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p> <p data-bbox="836 1429 1439 1675">6. 그 밖에 기업금융업무와의 관련성 및 예탁자 보호를 감안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할 것</p> <p data-bbox="836 1680 1439 1926">③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제1항제3호에 따른 종합투자계좌의 관리업무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p> <p data-bbox="836 1948 1439 2060">1.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자산을 고유자산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p>

현 행	개 정 안
	<p><u>고시하는 방법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것</u></p> <p>2. <u>종합투자계좌 운용자산을 종합 금융투자사업자의 고유자산 또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가격으로 거래할 것. 이 경우 공정한 가격으로 거래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u></p> <p>3. <u>예탁자로부터 예탁받은 금전의 합계의 100분의 70이상을 기업금융관련자산에 운용할 것. 이 경우 구체적인 산정방식 및 비율 충족 여부에 대한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u></p> <p>4. <u>제3호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남은 예탁금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것</u></p> <p><u>가. 법 제10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u></p> <p><u>나. 환매조건부매수</u></p> <p><u>다.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u></p> <p><u>라. 그 밖에 기업금융업무와의 관련성 및 예탁자 보호를 감</u></p>

현 행	개 정 안
	<p>안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운용 방법</p> <p>5. 분기별로 1회 이상 종합투자계좌에 편입된 자산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시가로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예탁자가 수시로 변경되는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6. 같은 기업 및 그 기업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에 대하여 종합투자계좌로 수탁한 자금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신용공여(대출, 어음의 할인, 지급보증, 자금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간접적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지 않을 것</p> <p>7. 종합투자계좌 계약 체결 전 예탁자에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예탁자(전문투자자는 제외한다)</p>

현 행	개 정 안
	<p>가 이해하였음을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받을 것</p> <p>가.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p> <p>나. 수익 산정 및 지급방법</p> <p>다. 보수(성과보수를 포함한다), 수수료 등 비용에 관한 사항</p> <p>라. 계약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p> <p>마. 그 밖에 예탁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p> <p>8. 예탁자로부터 예탁받은 금전의 합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부동산관련자산에 운용하지 않을 것. 다만,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 대규모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p> <p>9. 그 밖에 기업금융업무와의 관련성 및 예탁자 보호를 감안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할 것</p>

1. 규제의 필요성

가. 현황 및 문제점

- 투자은행이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저렴하고 안정적인 자금조달 수단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나,
 -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RP, ELS를 통한 조달이 전체 조달액의 73%에 달할 정도로 의존도가 높은 상황
 - 하지만 RP의 경우 만기가 짧고, RP·ELS는 담보채권, 헤지(hedge) 자산 보유가 불가피하여 자금활용도가 떨어짐

나. 정부 개입의 필요성

-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기업금융업무를 원활히 영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으로서 자기자본이 4조원 이상인 자에게는 단기금융업무를, 8조원 이상인 자에게는 종합투자계좌 관리업무를 새로이 허용하되,
 - 예탁자보호 및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해 적정 운용규제 등 영업행위준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 규제의 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 단기금융업무 및 종합투자계좌 관리업무에 대한 운용규제를 도입함으로써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건전한 자금조달을 하여 기업금융업무를 효율적으로 영위할 것으로 기대됨

2. 대안의 발굴·검토

가. 고려된 대안

< 현행유지안 : 해당사항 없음 >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안정적 자금조달 수단을 신규로 허용하는 것인 만큼, 그에 대한 운용규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비규제대안 : 해당사항 없음 >

-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해 신규업무를 허용하는 것인 만큼, 기업금융 활성화 및 예탁자 보호를 위해 운용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비규제대안은 상정하기 곤란

< 규제대안 : 적정 운용규제 등 영업행위준칙 마련 >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단기금융업무 및 종합투자계좌 관리업무를 허용하고 그에 대한 운용규제를 마련

나. 대안의 분석

< 네거티브 방식 적용여부 >

- 단기금융업무로 조달한 자금의 부적절한 운용수단을 제한(개인에 대한 신용공여, 기업금융과 무관한 파생상품투자)하는 사항은 네거티브 방식이 적용됨

< 민간의 자율성·창의성 >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단기금융업무 및 종합투자계좌 관련 영업행위 준칙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민간의 자율성·창의성이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은 아님

< 해외사례 분석 >

- 유럽의 경우, 상업은행(CB)과 투자은행(IB)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유니버설뱅크(Universal bank) 체계를 채택하여, 1개의 금융회사가 수신, 자금중개 뿐 아니라 기업금융 기능을 함께 수행
- 특히, 독일의 글로벌 대형 CIB(Corporate Investment Bank)인 Deutsche Bank는 기업금융 및 자본시장 업무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다각화된 수익기반을 구축
 - 투자은행 부문에 특화된 운용규제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며 단일 은행(entity)으로서 자본규제·유동성규제 등이 적용

< 타법사례 분석 >

- 해당 사항 없음

< 위임근거 검토 >

- 근거 법령 : 자본시장법 제77조의3

< 이해관계자 협의 >

- 사전협의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였고, 특이 사항은 없었음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 현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고비용 자금조달 구조로는 기업금융을 위한 안정적인 자금을 지원하기 어려움

< 결론 >

-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투자은행으로서의 적극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새로운 자금조달 업무를 허용하되,

- **예탁자 보호 및 기업금융 활성화** 목적달성을 위하여 운용
규제 등 **영업행위 준칙**을 마련해야 함

3. 대안별 비용·편익 분석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존 시스템으로 신규업무 영위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은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함**

* 현행 증권사 자금담당부서 등에서 추가비용부담 없이 신규업무 영위 가능

4. 대안분석의 종합결론

가. 대안별 집행자원 및 능력

< 행정적·재정적 집행 가능성 >

-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자본규모에 따라 영위하게 될 단기금융업무 및
종합투자계좌 관리업무는 기존 시스템으로 가능하며 추가적인
인력 및 예산소요 없음**

< 기술적 집행 가능성 >

-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자본규모에 따라 영위하게 될 단기금융업무 및
종합투자계좌 관리업무는 기존 시스템으로 가능하며 기술적
어려움 없음**

< 지자체 등 집행 가능성 >

- **해당사항 없음**

나. 분야별 규제영향평가 필요성

<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기술규제 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다. 대안 선택 및 근거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다양하고 효율적인 자금조달 수단을 가지게되어 기업금융을 위한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함

라. 선호된 대안의 기대효과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금융 활성화를 이룰 수 있으며, 운용 규제를 두어 예탁자 보호 및 기업금융 활성화 목적 달성이 가능함

마. 선호된 대안의 이해관계자 의견 및 조치

사전협의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였고, 특히 사항은 없었음

< 규제의 개요 >

1. 규제사무명	증권 인수인에 대한 책임 강화													
2.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작성 자	이름	송병관									
	담당부서 (과)	자본시장과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김태현		연락처	02-2100-2643									
	과장	박민우		이메일	songbk99@korea.kr									
3. 관계법령 · 고시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35조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20%;">유형</th> <th style="width:20%;">인원수 또는 규모</th> <th style="width:20%;">의견 수렴방식</th> <th style="width:40%;">의견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454 1137 619 1350">피규제자</td> <td data-bbox="619 1137 798 1350">금융투자업자</td> <td data-bbox="798 1137 989 1350" rowspan="2">사전 업무협의 및 2643</td> <td data-bbox="989 1137 1431 1350"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data-bbox="454 1350 619 1456">이해관계자</td> <td data-bbox="619 1350 798 1456">금융투자업자, 관련협회</td> </tr> </tbody> </table>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 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금융투자업자	사전 업무협의 및 2643	-	이해관계자	금융투자업자, 관련협회	인수업을 포함한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증권사(48개)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 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금융투자업자	사전 업무협의 및 2643	-										
이해관계자	금융투자업자, 관련협회													
이해관계자	금융투자업자, 관련협회													
5. 규제 존속기한	없음(지속추진 필요)													
6. 구분 (신설 또는 강화)	강화													
7. 신설(강화) 규제의 요지	증권신고서 부실기재시 손해배상 책임주체의 범위를 ‘주관회사’에서 ‘인수단에 참여한 모든 증권사’로 확대													
8. 규제체계 및 법령위계정보	자본시장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135조													

□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내용

- 증권신고서 부실기재시 손해배상 책임주체의 범위를 '대표주관 회사'에서 '인수단에 참여하는 모든 증권사'로 확대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35조(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을 지는 자) ① (생략)</p> <p>② 법 제12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p><u>1. 발행인 또는 매출인으로부터 직접 증권의 인수를 의뢰받아 인수 조건 등을 정하는 인수인</u></p> <p>2. (생략)</p>	<p>제135조(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을 지는 자)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p> <p><u>1. 모든 인수인</u></p> <p>2. (현행과 같음)</p>

1. 규제 의 필요성

가. 현황 및 문제점

- 주관사가 혁신적 기업 발굴 등 상장·공모과정에서 적극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incentive)와 함께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의 상장·공모의 관행은 우수기업 상장으로 인한 인센티브 및 그에 상응하는 책임성이 정착되지 못함
 - 증권신고서 부실(不實) 기재에 따른 책임이 대표 주관사에 한정되어 인수단 전체의 Check & Balance 기능이 미흡

나. 정부 개입의 필요성

- 주관사·인수인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미국, 홍콩과 같이 증권신고서 부실기재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인수단에 참여한 모든 증권사로 확대

다. 규제의 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 손해배상 책임범위 확대를 통해 모든 인수증권사가 주관사의 업무 수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

2. 대안의 발굴·검토

가. 고려된 대안

< 현행유지안 : 대표주관회사에 한하여 손해배상 책임 부과 >

- 증권신고서 부실기재시 대표주관회사*에 한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함

* 발행사로부터 증권인수를 의뢰받고, 발행사와 인수조건 등을 결정하는 인수인

< 비규제대안 : 해당사항 없음 >

- 증권신고서 부실기재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의무 부과가 필요함

< 규제대안 : 모든 인수인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 부과 >

- 주관사·인수인의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증권신고서 부실기재시 인수단에 참여한 모든 증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함

나. 대안의 분석

< 네거티브 방식 적용여부 >

- 인수인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사항으로 네거티브 방식 적용 대상이 아님

< 민간의 자율성·창의성 >

- 인수인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사항으로 민간의 자율성·창의성이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은 아님

< 해외사례 분석 >

- 미국·홍콩의 경우 증권신고서 부실기재시 모든 주관사·인수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있음

① 미국

- 원칙적으로 모든 인수인이 책임을 지고 전문가 의견, due diligence 항변 등을 통해 면책(1933Act §11)

② 홍콩

- 투자설명서 발행을 승인한 모든 주관사가 책임을 부담하고 전문가 의견, due diligence 항변 등을 통해 면책(CAP32 §40)

< 타법사례 분석 >

- 해당 사항 없음

< 위임근거 검토 >

- 자본시장법 제125조제1항제5호에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 이해관계자 협의 >

- 사전협의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였고, 특이 사항은 없었음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 증권신고서 부실기재시 대표주관회사에 한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책임이 한정되어 인수단의 모니터링 기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움

< 결론 >

- 증권신고서 부실기재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인수단에 참여한 모든 증권사로 확대
- 이를 통해 모든 인수증권사가 주관사의 업무 수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효과 기대

3. 대안별 비용·편익 분석

증권신고서의 부실기재를 확인·방지하는 사항(자본시장법 §125)은 인수인에게 '상당한 주의'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는 인수인의 당연한 주의의무로서 추가적인 비용은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함

※ (참고판례) 중국고섬공고유한회사('11.1월 코스닥상장) 투자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책임 소송에서 주관회사(한화투자증권) 및 단순인수회사(HMC증권, IBK증권)의 책임은 부인되었으나, 대표주관회사(미래에셋대우증권)는 **상장 폐지로 인한 투자자 손해액(62억원)의 절반인 31억원을 배상**한 사례

4. 대안분석의 종합결론

가. 대안별 집행자원 및 능력

< 행정적·재정적 집행 가능성 >

증권신고서 부실기재를 확인·방지하는 업무는 이미 수행하고 있는 업무로서 추가적인 인력 및 예산소요 없음

< 기술적 집행 가능성 >

증권신고서 부실기재를 확인·방지하는 업무는 이미 수행하고 있는 업무로서 기술적 어려움 없음

< 지자체 등 집행 가능성 >

해당사항 없음

나. 분야별 규제영향평가 필요성

<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기술규제 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다. 대안 선택 및 근거

- 인수단이 상장·공모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나, 증권신고서 부실기재에 따른 책임이 대표주관사에 한정되는 등 책임성이 정착되지 못함
 - 미국, 홍콩과 같이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인수단에 참여한 모든 증권사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라. 선호된 대안의 기대효과

- 증권신고서 부실기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모든 인수 증권사가 대표주관사 또는 인수인 상호간의 업무수행에 대한 모니터링(check&balance)을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됨

마. 선호된 대안의 이해관계자 의견 및 조치

- 사전협의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였고, 특이 사항은 없었음